

● 제289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
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2019. 9. 3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시장 제출】

의안번호 978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시장

나. 제출일자 : 2019년 8월 7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가. 도시화, 산업화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로 집먼지 진드기, 애완동물, 흡연, 대기오염 등 알레르기 질환 악화요인의 증가와 면역체계 변화 등으로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증가하고 있음. 알레르기 질환은 전 생애 동안 지속되어 삶의 질 훼손을 초래하고 있어,

나. 이에 서울시민의 아토피·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『서울시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』를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이 축적된 기관에 위탁·운영 중이며,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(재계약)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

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○ 위탁기간: 3년(2020.1.1. ~ 2022.12.31.)

○ 인 력: 센터장1(비상근), 팀장1(상근), 팀원4(상근)

○ 소요예산: 390,000천원/연(국비50%, 시비50%)

○ 위탁내용

- 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(유치원, 어린이집 포함) 운영 및 인증 지원
-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
- 교육·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
-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 등

나. 필요성

○ 알레르기 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한정적인 예산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물적·인적 인프라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

제41조(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·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○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

제6조(건강생활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

제7조(서울시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) ② 시장은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를 「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 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
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II. 검토의견 (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의 제출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7조1)에 따른 서울시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 및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2)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임. 시장이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음.

- 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(유치원, 어린이집 포함) 운영 및 인증지원
-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
- 교육·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
-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 등

- 1) 제7조(서울시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.
1. 아토피·천식 안심기관 운영지원 및 관리
 2.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지원 및 홍보자료 제공
 3. 알레르기 질환 정책개발 지원
 4. 기타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- 2)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② **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**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2 민간위탁 사무 추진내역

가. 민간위탁 사무 위탁 내역

- 2008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동 사무의 위탁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음. 최근 2회차는 서울의료원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여부에 따라 공모가 진행 될 예정이다.

위탁기간		수탁기관	선정방법
1차	'08.05.02~'08.12.31.	사)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	※보건복지부 '천식아토피 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계획'에 의거 지정 위탁 (보건복지부-108, '08.03.11)
2차	'09.01.01~'09.12.31.	사)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	
3차	'10.01.01~'10.12.31.	사)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	
4차	'11.01.01~'11.12.31.	사)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	
5차	'12.01.01~'13.12.31.	사)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	공개(제한)경쟁 2회 유찰에 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
6차	'14.02.07~'16.12.31.	서울의료원	수탁기관 공모에 의한 신규계약
7차	'17.01.01~'19.12.31.	서울의료원	재계약
8차	'20.01.01 부터 최대 3년간	공모예정	공모예정

- 최근 3년간의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. 예산액은 국비와 시비 각각 50:50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근 센터장 1인과 상근직원으로 팀장 1인, 팀원 4인으로 구성되어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음.

연도별	사업비용	구성	비 고
2017년	380,000,000	인건비 154,802 사업비 192,728 운영비 32,407	국비 50%, 시비 50%
2018년	390,000,000	인건비 176,124 사업비 9,428 운영비 204,448	
2019년	390,000,000	인건비 190,788 사업비 32,882 운영비 166,330	

나. 민간위탁 사무 수행 내역

- 동 사무는 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(유치원, 어린이집 포함) 운영 및 인증지원,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, 교육·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. 이에 따라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목표대비 달성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9년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상반기 보다는 매년 하반기에 집중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.
-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2019 하반기 자치구 담당자·지역주민 대상 교육 집중 실시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.

구 분	내 용	추진실적					
		2017		2018		2019.6.	
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 운영지원	안심학교·어린이집·유치원 관리	99%	691개 소	101%	654개 소	116%	655개 소
	안심학교·어린이집·유치원 교육지원	101%	685회	97%	629회	64%	392회
	안심학교·어린이집·유치원 현장방문	95%	190회	136%	34회	44%	11회
	인증안심학교 관리	184%	46회	260%	39개 소	48%	19개소
	인증안심학교 교육지원	216%	108회	164%	82회	75%	30회
	서울시 아토피·천식 예방관리 결과보고회	100%	1회	100%	1회	하반기 시행	하반기 시행
	안심학교 유병조사 DB 관리	100%	자료 확보	100%	자료확 보	진행 중	진행 중
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	보건소 담당자 및 보건·보육교사 교육 보건소 지원교육, 아토피·천식 화목교실	258%	468건	98%	71회	34%	36회
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	교육자료 개발	100%	2건	200%	2건	진행 중	-
	교육자료 제공	94%	94,16 7건	1,239 %	24,79 1부	83%	12,443 부
기 타	센터홍보(SNS 게시물, 언론매체 등)	193%	193/ 월	333%	333건 /월	783%	783건/ 월
	상담제공(온·오프라인, 전화상담 등)	104%	104건 /월	102%	102건 /월	101%	101건/ 월
	정책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(운영위원회, 내·회부 회의 등)	140%	28회	100%	18건	59%	10회

- 최근 3년간의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특별한 문제점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2017년의 지도점검결과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동 사무의 수행실적에서 지적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됨.

구 분	점검일	점검사항	주요지적사항	조치결과
2017	2017.8.7.	예산집행 및 사업추진현황 등 민간위탁운영사항 전반	사업추진 목표달성 철저	하반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완료
2018	2018.1.16.		없음	없음
	2018.8.23.		없음	없음

- 이는 2019년 예산 집행실적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집행실적이 50%에 그치는 점은 동 사업의 예산 중 약 48.7%가 인건비 항목임을 염두에 두었을 때 실제 사업의 집행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임.

구 분	예 산	집 행 률	외부 회계감사결과
2017	380,000,000	100%	적정집행, 불인정금액없음
2018	390,000,000	100%	적정집행, 불인정금액없음
2019	390,000,000	50%	예산집행 완료 후 2020년 시행예정

3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2³⁾는 민

3) 제4조의2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간위탁 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.
동 사무가 이에 해당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.

- 동 사무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로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동 사무의 수행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업의 주요 내용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안심기관의 교육지원이나 홍보, 운영지원 및 관리, 정책개발의 지원 부분이 주된 역할임에 보건의료라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.
- 또한 한정된 자원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기관이 지난 5년간 수행해온 네트워킹 자원 등을 활용함에 있어 비용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.
- 이 외에 최근 3회에 걸친 지도점검 결과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민간위탁에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임.

4 종합의견

- 「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른 서울시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의 지난 민간위탁 성과 및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라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사료됨.